소관부서: 시민교육지원과

제정 2004 · 7 · 23 조례 제 504호 개정 2006 · 4 · 17 조례 제 616호 전문개정 2007 · 7 · 2 조례 제 670호 (제명개정) 전부개정 2009 · 10 · 9 조례 제 804호 일부개정 2013· 5· 6 조례 제 978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일부개정 2014 · 4 · 10 조례 제1028호 (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) 일부개정 2015 · 12 · 31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6 · 7 · 5 조례 제1234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일부개정 2019 · 1 · 1 조례 제1464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7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 따라 이천시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·12·31〉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 ·31〉
 - 1. "평생학습"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,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.
 - 2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- 3. 삭제〈2015·12·31〉
- 4. "평생학습관"이란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을 말한다.
- 5. "주민자치학습센터"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각 읍·면·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·4·10〉
 - ②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·단체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 및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 - ③ 시장은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 - 1. 학점은행제 운영
 - 2. 우수동아리 육성
 - 3. 우수프로그램 육성
 - 4. 소외계층 프로그램 육성
 - 5.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6.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
- 7.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
- 8.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

제2장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

- 제6조(설치) ① 시장은「평생교육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,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**제7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,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 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 - 1. 평생학습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
 - 3.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**제8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 -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 - 1. 당연직 위원
 - 가. 이천시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국장
 - 나. 이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과장
 - 다.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
 - 2. 위촉직 위원

- 가.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
- 나. 평생교육 전문가
- 다. 평생학습 기관 · 단체의 운영자
-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민교육 지원과장이 된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, 2016·7·5, 2019·1·1, 2023·3·6, 2024·7·1〉
- 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- 제9조(임기)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 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**제10조(의장의 직무 등)**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. 〈개 정 2015·12·31〉
 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
「제목개정 2015·12·31〕

- 제11조(회의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〈개정 2015·12·31〉
 -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 31〉
- 제12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 - 1.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
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3.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
 - 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[제목개정 2015·12·31]

- 제13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- 제15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이천시 평생학습관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
- 제16조(평생학습관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·운영한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 - ② 평생학습관은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28(창전동)내에 둔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
[제목개정 2015·12·31]

- **제17조(사업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5·12·31〉
 - 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- 2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· 육성 및 지원 (운영)
 - 3. 평생교육 기관·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 - 4.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5.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
 - 6.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
 - 7.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 - 8.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붐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

(추 3)

- 9.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
- 10.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8조(공동사업추진 등)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·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- 제19조(학습관 운영지원)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습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학습계좌)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·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(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)를 도입·운영할 수 있다.
- 제21조(성인문해교육)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·12·31]

- **제22조(평생교육사 배치)**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교육지원과,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6·7·5, 2024·7·1〉
- 제23조(자원봉사자)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- 제24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시장은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·5·6, 2016·7·5, 2024·7·1〉
 -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- 제25조(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 지정)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·단체·공공시설·교육 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 학습 협력기관·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·12·31〉
- 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5·12

· 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6·4·17 조례 제61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7·7·2 조례 제67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·10·9 조례 제80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부칙〈2013·5·6 조례 제9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, 제5조제2항, 제7조제3호, 제8조제3항, 제3장의 제목, 제16조의 제목·제1항·제2항, 제17조 본문, 제22조 본문, 제24조제1항 중 "평생학습센터"를 "평생학습과"로 한다.

④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〈2014·4·10 조례 제1028호,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·12·31 조례 제119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 • 7 • 5 조례 제123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평생학습과장"을 "평생교육과장"으로 하고, 제22조 중 "평생학습과" 를 "평생교육과"로 하며. 제24조제1항 중 "평생학습과"를 "평생교육과"로 한다.

③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〈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- ③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제8조제3항 중 "평생교육과장"을 "교육청소년과장"으로 한다.
- ③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- ③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제8조제3항 중 "교육청소년과장"을 "자치교육과장"으로 한다.
- ③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24·7·1 조례 제2117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- ② 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 제8조제3항 중 "자치교육과장"을 "시민교육지원과장" 으로 하고, 제22조 및 제24조제1항 중 "평생교육과"를 "시민교육지원과"로 한다.
- ②5 부터 ②8 까지 생략